

증권사 「최선집행의무 가이드라인」 제정방안

2024. 5. 9. (목)



금융감독원
자본시장감독국

목 차

1. 가이드라인 제정 취지
2. 가이드라인상 증권사의 의무
3. 최선집행 세부 기준의 내용
4. 기타사항

1 가이드라인 제정 취지

1. 가이드라인 제정 취지

- ☑ 증권사가 금융투자상품(이하 “상품”)의 청약 또는 주문 처리 시 최선의 거래 집행을 위하여 가이드라인을 마련
 - 시장참여자들의 **예측가능성 제고** 및 **투자자 보호**

2 가이드라인상 증권사의 의무

2. 가이드라인상 증권사의 의무

최선주문집행 의무

- ☑ 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선집행 세부 기준 마련 및 집행 의무를 증권사에 부과**

투자자 지시 우선 원칙

- ☑ 투자자 주문을 처리함에 있어 **투자자의 별도 지시가 있는 경우 증권사 세부 집행기준에 우선 적용**
- ☑ 따라서 투자자 **주문처리 지시내용**이 증권사의 **최선집행 세부 기준과 상이하더라도 지시내용에 따라 주문 처리**

2. 가이드라인상 증권사의 의무

주문집행체계 구축

- ☑ 투자자 주문을 처리함에 있어 증권사는 복수 유통시장의 **통합호가***를 기준으로 최선집행기준에 따라 **주문을 집행하는 체계를 구축**
* 증권사가 주문을 배분하기로 한 전체 유통시장의 호가를 실시간으로 통합
- ☑ 증권사는 투자자의 주문이 **특정시장에 집중되도록 투자자 주문지시를 유도할 수 없음**
- ☑ 증권사 **주문집행체계**에 투자자의 선택에 따라 **투자자 지시내용이 최대 3개월간 유효***하게 **설정 가능**(최선집행 세부기준 변경주기 3개월을 고려)
* 투자자 지시내용 만료 1영업일 전에 만료 사실을 투자자에게 통지

2. 가이드라인상 증권사의 의무

그 외 법상 의무

- ☑ 증권사는 최선집행기준을 3개월마다 점검하는 등 법규상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

구분	의무 관련 기한	관련 법규
기준 점검·공표	3개월마다 점검, 부적합으로 변경시 공표	법§68③, 영§66의2③, ⑤
설명서 ¹⁾ 교부	매매주문을 받을 때 또는 미리 교부	법§68④, 영§66의2⑥
서면등 ²⁾ 증빙 제공	투자자가 요구하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	법§68②, 영§66의2④ 등
기록·유지	10년 이상	영§66의2⑦ 등

1) (설명서) 최선집행기준을 기재 또는 표시한 설명서

2) (서면등) 주문 집행 후 해당 투자자가 그 주문이 최선집행기준에 따라 처리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 등을 요구 시 제공하는 자료

3 최선집행 세부 기준의 내용

3. 최선집행 세부 기준의 내용

적용대상 증권 범위

- ☑ 증권시장 상장 주권, 주권 관련 상장 증권예탁증권

집행시장 선택

- ☑ 증권사는 사전에 특정 집행시장을 주문 배분대상에서 제외(선택)할 수 있으나, 하나 또는 일부 집행시장을 선택한 이유를 최선집행 기준(공표대상)에 명시
- ☑ 투자자 주문(정정주문 포함) 집행시 **최선집행 세부 기준**에 따라 주문을 배분할 시장을 선택
- ☑ 다만, 특정 집행시장에서 접속매매가 불가능한 시간대*에는 투자자 주문을 증권사 운영방침에 따라 배분 가능

* ATS만 운영되는 시간대(08:00 ~ 08:50, 15:30 ~ 20:00)

3. 최선집행 세부 기준의 내용

최선집행 일반 원칙

- ✓ Taker 주문(기존 물량 체결 주문)은 총비용(매수) 또는 총대가(매도)를 기준으로 시장에 주문 배분
- ✓ Maker 주문(신규 물량 조성 주문)은 매매체결 가능성을 우선하는 집행시장 배분기준 수립

구분	[Taker 주문] 기존 물량 체결 주문	[Maker 주문] 신규 물량 조성 주문
매수	총비용*이 투자자에게 유리한 시장으로 우선 배분 * (주당 가격×매수수량) + 거래비용	매매체결 가능성을 고려하여 우선배분
매도	총대가*가 투자자에게 유리한 시장으로 우선 배분 * (주당 가격×매도수량) - 거래비용	

3. 최선집행 세부 기준의 내용

원칙 외 집행

- ✓ 증권사는 집행원칙과 상이한 주문 배분기준을 수립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상이하게 배분기준을 마련한 사유를 최선집행기준에 기재
- ✓ 대량 주문 집행시에는 **암묵적 비용**을 추가적으로 **고려 가능**
※ 대량주문은 지수 또는 개별 주식의 주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하여 증권사가 합리적 기준을 설정할 수 있으며 이를 공시

시장차별금지

- ✓ 증권사는 거래 집행시장을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하여서는 아니됨**
- ✓ 다만, 주문 체결에 따라 투자자로부터 받는 수수료에 있어 집행시장의 **체결비용***의 차이를 원칙적으로 반영

* ATIS는 KRX 대비 Taker 주문 및 Maker 주문의 수수료를 인하(20~40%)할 계획

4 기타사항

4. 기타사항

최선집행 기준 적용 일반 예외

- ☑ (1)투자자 별도 지시, (2)투자일임계약에 따른 주문, (3)거래 약관 등에 집행방법이 특정된 주문

구분	세부 집행 방법
투자자로부터 집행 방법에 관한 별도 지시 또는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지시 받은 집행 방법
투자일임계약 등에 근거한 집행	당해 계약 등에 있어서 투자자로부터 위임 받은 범위 내에서 회사가 선정하는 방법
거래 약관 또는 계약 등에 있어서 집행 방법을 특정하는 거래	당해 집행 방법

4. 기타사항

최선집행 기준 적용 특별 예외

- ☑ 시스템 장애, 시장조치(예: 거래정지) 등으로 인해 부득이한 경우

Safe Harbor (결과에 대한 책임 회피 조항)

- ☑ 증권사 최선집행의무는 최선의 조건으로 주문을 집행하려는 증권사의 절차적 책임
- ☑ 객관적인 제반사정상 주문시점에 증권사가 최선의 조건으로 집행하였다면, 주문결과의 책임은 증권사에 미귀속

감사합니다

